

1997.12.20

1997年度 第3回 忠清北道 追加更正豫算案

檢 討 報 告 書

(社會福祉局 所管)

教育社會委員會 專門委員

1. 예산안 규모

1. 일반회계

- 사회복지국소관 1997년도 제3회 충청북도일반회계 추가
경정예산안 규모는

744억 5,877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724억 2,354만원
대비 2.8%인 20억 3,523만 6천원이 증액되었고,
도본청 일반회계 대비 9.6%를 점유하고 있음

- 도본청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7,794억 2,389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8%의 증가
율을 보이고 있음

<표 1> 도본청 일반회계 예산안과의 비교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안 (%)		기정예산액 (%)		비교증감 (%)	
	예산액	비율	예산액	비율	증감액	비율
도 본청	779,423,897	100	773,529,784	100	5,894,113	0.8
사회복지국	74,458,776	9.6	72,423,540	9.4	2,035,236	2.8

○ 기정예산액 대비 성질별 증감률은

자본지출이 11.6% 증액되었고, 기타는 변동이 미미한 수준임

<표 2> 성질별 증감규모 (사회복지국소관)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안 (%)		기정예산액 (%)		비교증감 (%)	
	예산액	비율	예산액	비율	증감액	증감률
합 계	74,458,776	100	72,423,540	100	2,035,236	2.8
인건비	269,588	0.4	272,588	0.4	▲3,000	▲1.1
물건비	456,799	0.6	456,799	0.6	0	-
이전경비	58,179,177	78.1	57,325,945	79.2	853,232	1.5
자본지출	10,427,000	14.0	9,342,153	12.9	1,084,847	11.6
용자및출자	0	-	0	-	0	-
보전재원	0	-	0	-	0	-
내부거래	5,126,212	6.9	5,026,055	6.9	100,157	2.0
예비비및기타	0	-	0	-	0	-

2. 특별회계

○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51억 1,126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46억 1,047만 8천원 대비 5억 78만 3천원이 증액되어 2.0%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표3>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증감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안 (%)	기정예산액 (%)	비교증감 (%)	
< 세 입 >	25,111,261	24,610,478	500,783	2.0
전 입 금	4,926,212	4,826,055	100,157	2.1
국고보조금	19,704,846	19,304,220	400,626	2.1
< 세 출 >	25,111,261	24,610,478	500,783	2.0
경상경비	23,918	53,918	▲30,000	▲55.6
의료보호비	24,910,967	24,210,184	700,783	2.9
예 비 비	175,376	346,376	▲170,000	▲49.1

II. 예산안 주요내역

1. 일반회계

가. 국비지원사업으로

보건복지부소관 국비보조사업 31개사업 중 신규계상 4개사업, 증액계상 20개사업, 감액계상 7개사업 임

중앙기금지원사업 6개사업 중 신규계상 1개사업, 증액계상 2개사업, 전액감액 1개사업, 감액계상 2개사업 임

나. 도비지원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 3개사업 중 증액계상 2개사업, 감액계상 1개사업임

다. 기타사업으로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전출금 1억 15만 7천원 증액계상
요보호여성 24시간상담실 전화설치 25만원 신규계상
인건비 300만원 감액계상 임

2. 특별회계

- 세입중 국고보조금이 4억 62만 6천원이 증액되었고, 이에따른 도비부담금 전입금이 1억 15만 7천원이 증액되었음
- 세출은 경상비 3,000만원 감액, 의료보호비 7억 78만 3천원 증액, 예비비 1억 7천만원 감액임

<표 4> 국비보조사업별 증감내역 (사회복지국소관)

() 내는 기정예산액임

<단위 : 천원>

구분	국비 (%)	도비 (%)	비고		
◆ 국비보조사업					
<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인보장구 교부	(25,760) 53,084 =27,324	80	(6,440) 13,271 =6,831	20	
정신질환시설 운영비	(1,321,107) 1,326,241 =5,134	70	(556,189) 568,389 =12,200	30	
장애인시설 수용보호	(893,832) 1,068,922 =175,090	80	(113,224) 133,615 =20,391	10	시군비 10%
사회복지관 장비구입 (※신규사업)	(0) 10,000 =10,000	50			시군비 50%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	(13,239,472) 13,142,975 =▲96,497	80	1,654,934) 1,642,869 =▲12,065	10	사군비 10%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2,489,916) 1,984,317 =▲505,599	79.9	(311,240) 249,206 =▲62,034	10	시군비 10%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	(1,026,820) 1,049,738 =22,918	80			시군비 20%
부랑인시설 수용보호비	(653,185) 801,783 =148,598	80	(82,740) 100,223 =17,483	10	시군비 10%
정신질환시설 수용보호	(1,100,101) 1,296,905 =196,804	80	(139,352) 162,114 =22,762	10	시군비 10%

() 내는 기정예산액임

<단위 : 천원>

구 분	국 비 (%)	도 비 (%)	비 고		
부랑인시설 운영	(494,771) 542,775 -48,004	70	(212,045) 232,618 -20,573	30	
월동대책보호비	(0) 280,020 -280,020	80	(0) 35,002 -35,002	10	시군비 10%
아동건전육성	(50,217) 56,004 -5,787	50			시군비 50%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	(339,091) 351,422 -12,331	80	(42,386) 43,933 -1,547	10	시군비 10%
아동복지시설 수용보호비	(343,782) 409,900 -66,118	80	(43,548) 51,922 -8,374	10	시군비 10%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1,000,542) 1,063,274 -62,732	70	(214,402) 227,737 -13,355	15	시군비 15%
보육시설 운영	(7,600,376) 7,794,971 -194,595	50	(3,218,440) 3,366,292 -147,852	21	시군비 21% 자 담 18%
노령수당	(3,831,114) 3,414,568 -▲416,546	70			시군비 30%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1,132,785) 1,124,648 -▲8,137	70	(242,739) 240,996 -▲1,743	15	시군비 15%
노인복지시설 수용보호비	(378,160) 473,609 -95,449	80	(47,902) 59,200 -11,298	10	시군비 10%
경로당 난방비	(327,320) 328,230 -910	70	(70,140) 70,335 -195	15	시군비 15%

() 내는 기정예산액임

<단위 : 천원>

구분	국비 (%)	도비 (%)	비고	
경로당 운영비	(785,568) 787,444 -1,876	70	(168,336) 168,738 =402	15 시군비 15%
보육시설 기능보강	(1,810,894) 1,788,315 =▲22,579	40	(1,358,171) 1,341,237 =▲16,934	30 시군비 30%
요양시설 증개축 (은혜의집)	(104,413) 251,676 =147,263	50	(52,206) 125,838 =73,632	25 시군비 25%
진천 노인복지회관 신축 (※신규사업)	(0) 389,565 =389,565	50	(0) 194,782 =194,782	25 시군비 25%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5개소) (※신규사업)	(0) 205,913 =205,913	50	(0) 102,956 =102,956	25 시군비 25%
모자복지시설 운영	(179,409) 155,974 =▲23,435	73.7	(32,037) 27,763 =▲4,274	13.1 시군비 13.1%
모자복지시설 수용보호비	(68,756) 86,108 =17,352	80	(8,709) 10,764 =2,055	10 시군비 10%
저소득모자가정 실고생자녀학 비	(87,667) 103,024 =15,357	80		시군비 20%
저소득모자가정 아동양육비	(27,083) 33,600 =6,517	80		시군비 20%
모자복지시설 기능보강	(18,375) 108,375 =90,000	(50) 50	(0) 45,000 =45,000	(-) 21 (시군비 50%) 시군비 29%
성폭력상담소 운영	(24,492) 22,608 =▲1,884	50		시군비 50%

() 내는 기정예산액임

<단위 : 천원>

구 분	기 금 (%)	도 비 (%)	비 고
<중앙기금지원사업>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훈계부식비	(30,961) 38,052 =7,091	50	시군비50%
사회복지시설 월동용 김장비	(33,173) 41,048 =7,875	50	시군비 50%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13,500) 12,500 =▲1,000	100	
소년소녀가장 전세금	(66,000) 28,000 =▲38,000	66.7	(33,000) 14,000 =▲19,000 33.3
퇴소아동세대 전세금 (※전액 감액)	(52,500) 0 =▲52,500	66.7	(26,250) 0 =▲26,250 33.3
소년소녀가장세대 지원 (※신규사업)	(0) 38,688 =38,688	100	

<표 5> 도비보조사업별 증감내역 (사회복지국 소관)

() 내는 기정예산액임

<단위 : 천원>

구 분	도 비 (%)	비 고
◆ 도비보조사업		
결함가정아동 보호지원	(227,450) 272,940 =45,490	50 시군비 50%
노인교통수당 지원	(2,020,737) 2,207,573 =186,836	30 시군비 70%
소년소녀가장 및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70,000) 68,000 =▲2,000	50 시군비 50%

III. 검토의견

1. 일반회계

- 사회복지국소관 1997년도 제3회 충청북도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744억 5,877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724억 2,354만원 대비 2.8%인 20억 3,523만 6천원이 증액되었고, 도본청 일반회계 대비 9.6%를 점유하고 있음

- 기정예산액 대비 성질별 증감률은

자본지출이 11.6% 증액되었고, 기타는 변동이 미미한 수준임

-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주요내역은

가. 국비지원사업으로

보건복지부소관 국비보조사업 31개사업 중 신규계상 4개사업, 증액계상 20개사업, 감액계상 7개사업 임
중앙기금지원사업 6개사업 중 신규계상 1개사업, 증액계상 2개사업, 전액감액 1개사업, 감액계상 2개사업 임
주로 중앙의 보조사업변경에 따른 것으로 타당하다도 사료됨

나. 도비관련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 3개사업 중 증액계상 2개사업, 감액계상 1개사업으로 주로 사업량 변동에 따른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다. 기타 사업으로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전출금 1억 15만 7천원 증액계상
요보호여성 24시간상담실 전화설치 25만원 신규계상
인건비 300만원 감액계상 되었음

다음사항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

- (P 96) 노령수당 감액 사유
- (P 98) 진천 노인복지회관 신축 세부내역
- (P 100) 퇴소아동세대 전세금 감액사유
- (P 102) 모자복지시설 기능보강 내역

2.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51억 1,126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46억 1,047만 8천원 대비 5억 78만 3천원이 증액되어 2.0%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주요내역은

- 세입중 국고보조금이 4억 62만 6천원이 증액되었고, 이에따른 도비부담금전입금이 1억 15만 7천원이 증액되었음
- 세출은 경상비 3,000만원 감액, 의료보호비 7억 78만 3천원 증액, 예비비 1억 7천만원 감액임

다음사항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

- (P 111) 의료보호대상자 자격관리 수수료 등 감액사유